**신원보증서**

1.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원의 의무기록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(전자의무기록 포함)을 조회하고자 합니다.

2. 시험책임자/기관의 소속의 직원임을 보증하고 본 기관이 규정하는 의무기록 관리규정/정보보호 관련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
3.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연구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것이며,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험책임자/기관의 공동 책임질 것임을 보증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대표자 (인)

고 신 대 학 교 복 음 병 원